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523129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주식회사

변론 종결2021. 3. 9.

판결 선고2021. 4. 6.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31,066원 및 그중 65,862,794원에 대하여 2020. 11. 2.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2020. 7.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20. 7. 16. 접수 제27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및 별지 '청구원인' 제8항 기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20. 11. 2.보다 앞선 2020. 9. 18. 송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의 오기로 이해한다).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2, 3, 5항 기재 각 사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각 상호 중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2020. 7. 3.경 조세를 체납한 사실, 이에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피고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을 한 D이 2020. 7. 22. 원고에게 보증부실 발생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92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별지 5항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앞서 2019. 7. 26. 체결되었고,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피고 A이 2020. 7. 3.경 조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멀지 않은 2020. 11. 2. 원고가 주식회사 D에 신용보증서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2019. 6. 29.경 피고 B의 금융채무 규모(개인대출 약 1억 4,800만 원, 보증채무 약 19억 4,500만 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위 피고의 채무가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외에도 상당한 규모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같은 무렵 위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B가 그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 매각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대물변제라고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의 1인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C는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선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면, ① 피고 A은 2018년 이래 계약금 외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② 2019년 현금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물품을 공급받고도 전자어음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③ 이후 위 전자어음마저 모두 부도 처리되었으며, ④ 부도 금액 중 4,950만 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별지 목록 부동산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였고, ⑤ 변제 후에도 미수금 1억 9,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나 피고 B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 C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선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결론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청구원인 제5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아

별지